

고객 안내문

고객님께서 가입하고 계신 '신영KORI증권투자신탁(주식)' 펀드는 투자원본액 50억원 이하인 소규모 펀드로서, 고객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 및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펀드의 해지를 결정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다 음 —

1. 펀드명 : **신영 KORI 증권 투자신탁(주식)**
2. 펀드 운용규모 : 11억원 (2012년 11월 30일 기준)
3. 해지 사유 : 소규모 펀드로 펀드의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하여 운용 중단이 불가피한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동법 시행령 제223조 제4호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한 해지
4. 해지 예정일 : **2012년 12월 27일 (목)**
5. 해지 관련 신문 공고일 : 2012년 12월 13일 (목) 매일경제신문
6. 환매 가능일자 : 2012년 12월 20일 (목) 이전 신청분까지 환매 가능
(펀드해지와 별도로 고객 개개인별로 환매신청할 경우에 해당되며, 상기 기간 내 환매신청 하지 않을 경우 12월 27일 자동 해지 처리)
7. 상환금 지급방법 : 해당 고객 계좌로 입금

1996년 설립 이래 16년 동안 일관된 투자철학과 운용원칙을 고수 하며, 공히 '대한민국 가치투자 名家'로써 굳건히 자리매김한 신영자산운용(주)은 더욱 우수한 상품으로 고객님을 다시 찾아 뵈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가치투자 원칙에 입각한 투명한 운용을 통하여 고객과의 장기 파트너십 관계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거래하신 판매회사 또는 당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건승과 다행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2월 5일

신영자산운용(주) 대표이사 사장 이상진 배상